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지역 센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센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2) 필요성 : 센서 기술 관련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센서산업 관련 축적된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업무 전반

- 1) 서비스 로봇용 센서 및 제어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 2) 센서산업 기업 대상 기업협의체 조성 및 운영
- 3)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지원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1. ~ 2026.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00백만원(도비 120, 시비 280)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400	80	17	303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31.)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 부서 의견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센서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2024~2025년 동안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해왔음
-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인건비는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 인건비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산정

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액 편성

※ 사업비(편성예산) : 2024년 335백만원, 2025년 4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80,000	-	-	-	-	80,000
	○ 간접비	17,000	-	-	-	-	17,000
	○ 사업비	303,000	-	-	-	-	303,000
	계	400,000	-	-	-	-	4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120,000	-	-	-	-	120,000
시비		280,000	-	-	-	-	28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00,000	-	-	-	-	400,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 김지원(☎480-603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400,000	
인 건 비	80,000	·참여인력(책임급)3명x12개월x15%이내 참여율 37,743천원 ·참여인력(선임급)4명x12개월x12.5%이내 참여율 37,178천원 ·참여인력(행정원)1명x12개월x13%참여율 5,079천원
사 업 비	303,000	·지능형센서플랫폼개발지원 80,000,000원x1건 80,000천원 ·기업협의체조성및운영 7,000,000원x1건 7,000천원 ·시제품제작지원 15,000,000원x11건 165,000천원 ·연구개발지원 재료비 26,000,000원x1건 26,000천원 ·세미나참가비 500,000원x6건 3,000천원 ·사무용품비 500,000원x2회 1,000천원 ·전문가활용비 400,000원x10건 4,000천원 ·회의비및다과비 200,000원x10회 2,000천원 ·인쇄비 500,000원x2건 1,000천원 ·국내여비 100,000원x20회 2,000천원 ·해외자료수집비 8,500,000원x1회 8,500천원 ·위탁회계정산 3,500,000원x1건 3,500천원
간 접 비	17,000	·기관공통운영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17,000천원

소 관 부 서		반도체방산과
입 안 자	과 장	전 명 성
	팀 장	임 진 환
	담 당 자	김 지 원 (480-6034)